

보고 번호	회의 차수	회의 일자	보고자
제 219 호	제 29 차	1989.12.21	총재 김건

보 고 「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」 개정

- 보고사항
1.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'주택상환사채'에 대한 보증을 금융기관의 사채보증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
  2. 수출기업에 대한 단기운전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급도(D/P), 인수도(D/A)조건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를 근거로 발행 되는 환여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할 수 있도록  
「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」을 개정하였기 이를 보고함

보고관계  
법규조항

금융기관은 「한국은행법」 제73조 제1항·제2호에서 정하는 물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. ~ 8 ( 생 략 )
9.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대출, 투자, 자금보증 및 인수업무의 취급기준과 용도별 한도의 준수



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칙」 제4조(금융문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)

한국은행총재는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여신취급기준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문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참고사항 「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」 개정내용

「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」 개정내용

증 전	개 정	비 고
제 1조 - 제 5조 (생략)  제 6조(사채보증 및 인수) ①~③ (생략) ④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사채보증총액은 보증 사채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기업 순재산의 2배 범위내로 하되 자본금 및 준비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.  <u>(신설)</u>  다만, '시설대여산업법'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 대여회사에 대한 사채보증은 당해회사 자기자본의 5배까지 취급할 수 있다. ⑤ (생략)  제 6조의 2(무역어음의 인수) ① 금융기관은 "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" 제4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무역금융 유통대상이 되는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(이하 "신용장"이라 한다)을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을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음(이하 "무역어음"이라 한다)을 인수할 수 있다. 1.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에서 신용장 상의 선적기일 또는 물품인도 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이내에 도래하는 어음 2. 액면금액이 신용장 금액(FOB기준)에 인수 당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이상인 어음 ⑥ 금융기관은 허위 또는 변조된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	제 1조 - 제 5조 (현행과 같음)  제 6조(사채보증 및 인수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사채보증총액은 보증사채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기업 순재산의 2배 범위내로 하되 자본금 및 준비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.  다만, 정부의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취급액은 사채보증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'시설대여산업법'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회사에 대한 사채보증은 당해회사 자기자본의 5배까지 취급할 수 있다. ⑥ (현행과 같음)	- 정부의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을 사채보증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  - 항 체하  - 금융기관 인수대상 무역어음의 확대 o D/P, D/A조건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를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 포함
제 7조 - 제 9조 (생략)  <u>(신설)</u>	제 7조 - 제 9조 (현행과 같음)  부 이 세칙은 1989. 12. 8. 부터 시행한다.	- 자구 정비  - 자구 정비  - 자구 정비  - 시신일자 명시